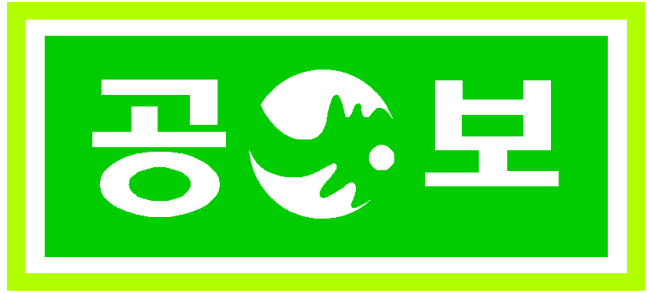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797 호 2013. 1. 28(월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8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-19호[도로명주소 변경 고시] ..... 4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80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] 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83호[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6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18호

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42-16(진장동)외 6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1. 2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

순번	증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-1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로 42-16(진장동)	2013-01-28	진장유동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	2009-01-23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4-1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로 42-14(진장동)	2013-01-28	진장유동단지의 유통단지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도로명을 부여	2009-01-23	
3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4-9외 14필지	울산광역시 북구 백골길 23-7(연암동)	2013-01-28	호문초등학교의 복서쪽에 있는 골짜기일대를 말하는데 호문공단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호자송도선생과 관련있어 도로명을 부여	2004-01-05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08 5-3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8길 5-1(진장동)	2013-01-28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	2004-12-27	
5	울산광역시 북구 천국동 265-2	울산광역시 북구 천국남로 134(천국동)	2013-01-28	주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을 사용하였으며 천국동 전체지역의 남쪽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	2008-03-11	
6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78 5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4길 21-1(진장동)	2013-01-28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	2004-12-27	
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95B 7-2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3(진장동)	2013-01-28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	2004-12-27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19호

##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

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월 28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

종전주소	변경전 도로명주소	변경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변경일	변경 사유
연암동 425	상방1길 19-4	상방1길 23	2013.1.28.	착오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i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1. 28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제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3-

**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**

「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지원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.

2013. 1. 25.

**울산광역시 복구청장**

1. 선발인원 : 4명
2. 접수기간 : 2013년 2월 8일(금) 18:00까지
3. 접수방법 : 직접방문, 우편 및 이메일(마감일 12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4. 임 기 : 2년(위촉일로부터)
5. 제출서류 :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자유서식), 자격증명서류 1부
6. 접 수 처 :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자 김현주  
☎ 052-241-8022/E-메일 : hjkim03@korea.kr
7. 선정결과 : 2013년 2월 20일(수) 18:00까지 개별통지
8. 자격요건
  - 토목·건축(구조)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  -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
9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구청 건축주택과(김현주 241-8022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83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3년 1월 28일

**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**

**「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 
관리 조례」 폐지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폐지이유**

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가 울산광역시 소관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

**2. 주요내용**

조례운영 목적 상실에 따른 「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 폐지

**3. 의견제출**

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(참조 : 환경위생과장)에게 전화(052-241-7764), FAX(052-241-7769)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**4. 기타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」 폐지조례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

**울산광역시 복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 
폐지조례안**

울산광역시 복구 마을상수도·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